

第121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2號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5月17日(金) 11時04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 위한條例廢止條例(案)
5.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用條例廢止條例(案)
8. 2002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9. 都市計劃(案) 決定 및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 위한條例廢止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用條例廢止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8. 2002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9. 都市計劃(案) 決定 및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 ..... 2面

(11時04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開議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

運營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 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 위한條例廢止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用條例廢止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8. 2002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9. 都市計劃(案) 決定 및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

(11時10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用條例廢止條例(案), 의사일정 제8항 2002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의사일정 제9항 都市計劃(案) 決定 및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市民行政委員會 李憲九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李憲九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李憲九議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李老根 區廳長 權限代行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무더위가 성큼 다가온 성하(盛夏)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본인이 위원장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 이후 주민문화복지센터를 개설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한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안)이 2002년 3월 7일 각 자치구로 시달된 바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의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문화복지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통일시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의 자치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함은 물론 민간인에 대한 업무의 위탁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구 단위의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무원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방법과 감면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징수주체 및 회계책임을 명시하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수의 하한선을 폐지하였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면서 위원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고문의 역할과 위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 개설·운영 등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개선(안) 등 각계 각층의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검토하고 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한 행정

자치부의 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이며 특히 우리 구에서 논란이 되었던 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여 일원화하면서 자치활동 관련 기능을 강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역할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밝힘으로써 동 자치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센터 사용료와 수강료를 구분하고 이의 징수주체를 명시한 것과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방법 및 감면기준을 제시하고 경비지출 등 회계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명확히 한 것은 제도 초기에 나타났던 문제점 해소는 물론 동 기능전환 사업의 핵심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성공적 정착과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위원장의 임기는 기존의 조례 내용대로 2년으로 하면서 연임이 가능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장의 역할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체가 어려우며 또한 위원장의 연임 등으로 임기가 너무 장기화됨에 따른 폐단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징수하던 관광사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제도가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에 과징금 부과·징수 내용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종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1995년 11월 15일 조례 제300호로 제정하여 운영중인 종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가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조례 설치근거 조항이 소멸되고 대신에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게 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었던 종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관광진흥

법시행령 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과 용어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상위법인 개정된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서 일부 중복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로 변경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존의 조례 제8조 내지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불금의 상환과 결손처분 그리고 결산에 관한 보고 등은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기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8조의 대불금의 상환과 제9조의 결손처분, 제9조의2의 결산에 관한 보고 등을 삭제하는 것은 의료보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함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에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본 조례 설치 근거법인 “국민의료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1989년 5월 6일 조례 제82호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종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도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는 사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동안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동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설치 의료보험 업무를 지원하여 왔으나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동법 부칙 제2조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하였고 대신에 그 임무와 기능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흡수됨에 따라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탁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의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종로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도위원의 자격·위촉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위촉방법,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주변의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면서 감시활동도 병행하도록 임무가 주어 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

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의 구성과 운영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고 동의 청소년 지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으나 위촉된 지도위원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등 여건조성과 아울러서 명확한 임무 부여 등 위원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였거나 앞으로 설치할 무인 자동제어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관리상 필요한 경우 200원 이내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6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와 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설치되었거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우리 구 관내 무인 자동제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징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따라서 조례상에는 사용료 징수 상한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되 앞으로 가칭 “공중화장실 사용료 심의위원회” 등을 별도로 두어 기간단위로 현실 사용료 금액을 심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5월 28일이면 정들었던 종로구의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집행부 공무원이나 특히 의원님들께 피해를 끼쳤다면 대단히 죄송하며 본의가 아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하건대 계속 종로구청과 종로구의회 그리고 종로구의 모든 가족과 계속 인연을 맺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의 앞날

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民行政委員會)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財務建設委員會 安載弘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安載弘 財務建設委員會 委員長 安載弘 議員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새로 부임하신 李老根 區廳長 權限代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4년 동안의 의정활동 생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들의 협조 덕택으로 위원장의 임기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도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중개업분쟁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모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면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모법에서 조정위원회 근거 규정을 삭제한 개정 취지는 현행 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중재 이용건수가 전국적으로 1건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대체수단으로 중개의 퇴인과 중개업자간에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실제적인 분쟁조정 기능을 갖추고자 함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결과 종전의 중개수수료 분쟁 시는 본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조정권고를 구하거나 행정청에 고발하여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해당 중개업소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신설된 중개계약제 이후에는 업소에 행정처분과 동시에 과다징수 수수료의 환급까지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 조례 폐지가 되더라도 중개분쟁 해소에 더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경우는 예산편성 전인 2001년 11월 25일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02년도에 추가 매입할 토지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 내용은 구립운동장과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사직동 산1-48, 산1-56 상의 약 1,100평에 설립될 종로문화체육센터는 구민 체육활동 공간이 절대 부족한 평창동, 부암동, 가회동, 삼청동, 무악동, 교남동, 효자동, 청운동, 사직동 등에 거주하시는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다목적 실내 체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심사되었고, 명륜1가 1-27의 4개 필지 전 해화초등학교 부지 약 6,000여 평에 설립될 구립운동장은 그 동안 종로구의 각종

체육행사시에 관내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치러오던 관행을 펼쳐버리고 종로구민 전체에 체육 및 각종 행사 장소로서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를 통해 주민들을 위해 애쓰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안)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동 85번지 15호 외 2필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 85번지 15호 외 2필지는 현재 적십자간호전문대학 소유로 학교부지와 연결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학교부지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신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운동 3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원)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운동 32번지 일대 매동초등학교의 학교용지 중 181㎡가 사직근린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어서 건축제한 등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현황상 학교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이 부분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체 공원용지로 사직공원과 여건이 동일하고 학교경계 바깥쪽에 위치한 부분을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학교로 변경되는 사직동 1번지 2호 일부는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지침에 따라 주변이 사직근린공원이므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으로 변경되는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청동 산 2번지 63호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및 공원)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동 산2번지 63호 일대는 삼청근린공원으로 1940년 3월 12일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않는 미집행시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원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현 공원부

지인 삼청동 산 2번지 63호 일대 2,701.2㎡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결정하고 인근의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대체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공공청사로 변경되는 삼청동 산 2번지 63호 일대 주변이 삼청근린공원으로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지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별 구분 지정하고 공원으로 변경되는 삼청동 산 2번지 16호 일대 일반주거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조정 측면이나 사유 토지주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用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書

2002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審査報告書

都市計劃(案) 決定 및 變更決定 意見聽取의件 結果報告書

(財務建設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

路區住民文化福祉센터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觀光事業에관한過徵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醫療保險運營支援을위한條例廢止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靑少年指導委員의委囑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鐘路區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運用條例廢止條例(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都市計劃(案) 決定 및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閉會)

○出席議員 18人

-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李東奎
-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 區廳長 權限代行 李老根
-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 財務局長 李炳滿
-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 保建所長 鄭有珍

The text on this page i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It appears to be a standard page of prose, possibly a chapter or section from a book, but the characters are too light to transcribe accurately. The layout consists of several paragraphs of text, with some lines appearing to be indented. The overall appearance is that of a scanned document where the contrast is very low, making the content unreadable.